

결 정

2018 - 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
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중 천

주 문

브릿지경제(viva100.com) 2017년 12월 2일자 「이은하 “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” 심경 토로」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『이은하 “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” 심경 토로
입력 2017-12-02 10:44

가수 이은하가 최근 파산신청과 더불어 쿠싱증후군 투병을 공개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.

앞서 이은하는 지난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와 건설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약 10억원의 빚을 진 바 있다. 이로인해 이은하는 결국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.

이은하는 그동안의 우여곡절 인생에 대해 지난 3월 MBC '휴먼다큐-사람이 좋다'에 출연해 말문을 열기도 했다.

당시 방송에서 이은하는 "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빚보증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"라며 "수면제도 먹어봤는데 3일만에 잘 깨어나더라.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더 노력해야지 마음먹었다"며 심경을 토로했다.

한편 이은하는 지난 1973년 '님 마중'으로 데뷔해 7080세대 톱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.

김용준 기자』

<<http://www.viva100.com/main/view.php?key=20171202001042389>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가수 이은하가 방송에 출연해 빛이 많아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먹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한 내용을 다루었다.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3월에 방송된 것이다.

그런데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말로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낸 데다 제목에 ‘자살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.

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 ④(자살보도의 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 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